

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문서번호 : 인개택총537-1호

공고일자 : 2020년 4월 27일

공고기한 : 2020년 4월 27일 ~ 2020년 5월 27일

게시판 : 각 충전소

# 공 고 문

본 조합은 정관 제12조(임원), 제13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), 제14조(선출방법)3항, 제15조(임기)1항, 선거규정 제15조(후보등록), 제20조(감사선출)에 의거하여 본 조합 감사를 선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선출인원 : 2명
2. 후보자등록 기간 : 2020. 5. 14(목) ~ 5. 15(금) 18:00(대리접수 불가)
3. 후보자등록 장소 :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사무실
4. 임 기 : 정관 제15조 의거 2020. 7. 1 ~ 2022. 6. 30까지 2년  
(2022년 상반기 감사 보고를 하여야 함)
5. 선출방법 : 정관 제14조(선출방법)3항, 선거규정 제15조(후보등록), 제20조(감사선출)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선출
6. 제출서류
  - ① 감사후보등록신청서(조합양식) 1부
  - ② 입후보자 이력서 1부
  - ③ 조합비 완납증명서(조합양식) 1부
  - ④ 재직증명서 1부
  - ⑤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  - ⑥ 공탁금 납입증명서 1부
7. 선거일 : 2020년 5월 28일(목) 대의원회의 예정(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)
8. 후보자 자격조건

정관 제13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조건)  
1항 “조합원이 아니면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단, 전무이사는 비조합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”  
2항 “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대의원 본 조합의

조합원 자격을 취득한(임원,대의원:만5년이상,이사장:만7년이상)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.”

3항 “선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.”

4항 “임원 및 대의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”

5항 “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.”

- ① 5대 강력범죄(살인, 강간, 강도, 마약, 약취유인)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이 확정된자
- ②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, 수뢰, 공금유용 및 횡령의 범죄 행위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③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회 이상 제기하였으나 2회이상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최종 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
- ④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상 진정,고소,고발,소송 등을 2회이상 제기하였으나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2회이상 확정되어 최종사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.

### 특별사항

정관14조(선출방법) 3항 “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출하며,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”

9. 감사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시 30만원을 본 조합 명의로 된 조합 거래은행(국민은행903801-01-645726)에 예치한 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선거규정 제15조 4항에 의거 접수된 공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10. 당선 공고 : 대의원회 선출 후 공고문 게시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

